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총무지원처장
(경유)

제목 공기구비품(로커 2종 3점) 불용요청

1. 물품관리규정 제50조(불용결정기준) 및 제 51조(불용결정의 절차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처 노후화 및 사용용도가 상실된 공기구비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용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구 분 : 비유동자산(공기구비품)

나. 대상물품 : 로커 2종 3점

다. 불용요청사유 :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물품 노후화 및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고장 등 용도상실

라. 세부내역 : 붙임 참조

붙임 : 1. 불용물품심사조서(유피스) 1부.
2. 불용물품소견서 및 사진 1부. 끝.

전략마케팅처 **김종국**

주임 김원기

팀장 김영길

처장 05/12
김종국

협조자

시행 전략마케팅처-1295 (2017.05.12.) 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-6311-2513 전송 02-6311-4281 / 2120110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